

인천중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명 (채용사유)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계획서 작성 ○ 학생선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훈련장 및 학생선수 안전관리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 종목별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행정업무 지원 ○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가. 근로계약기간: 채용시 ~ 2027. 2. 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무장소: 인천중학교 체육자치부실 및 본교 사격장
-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2:30 ~ 20:30 (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훈련 및 대회 출전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라. 휴게시간: 13:00 ~ 14:00
-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 바. 보 수: 월급제 (기본급 + 제수당 + 지도수당 등)
 - 기본급: 「2026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수당: 「2026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도수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 등) 의거 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사격 종목에 한함, 적용 기준일: 응시 원서 제출일 기준)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고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사격 종목)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6]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개인이 법원에서 발급)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류 [붙임 4, 붙임 5] ④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함) ⑤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발급)	각 1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30.(화) 16:00 ~ 2026. 7. 3.(금) 16:00**

나. 접수방법 : 본교 4층 체육자치부실 직접제출 또는 전자메일 접수 (inclock@naver.com)

- 전자메일 접수: inclock@naver.com [파일명: 학교운동부지도자_000(본인성명)]

※2026년 7월 3일(금)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6. 7. 3.(금) - 개별 통보

마. 2차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7.6.(월) 10:00, 2층 교사협의실

바. 최종 합격자 통보 : 2026. 7. 7.(화) 이전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붙임 7]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문의 사항은 인천중학교 운동부 감독(☎ 032-629-8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인천중학교장

응시원서

			응시번호	※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명	교육공무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사진)
	한자		휴대폰 (필수기재)			
주소						
경력	구분	기간	근무년수	근무기관 (부서)	직위(급)	퇴직사유
		~				
		~				
		~				
		~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격 □ 면허증			시행처	
<p>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인)</p> <p>인천중학교장 귀하</p>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조직적응력 및 문제해결력, 자기계발 및 기타(직무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26. . . .

작 성 자 :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육기관(공립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및 특수운영직군 인사 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2026. . .

확인자 :

(인)

인천중학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